#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57

발의연월일: 2021. 1. 29.

발 의 자:추경호·김예지·김용판

김정재 · 김희국 · 서병수

성일종・양금희・윤창현

이종배 · 이종성 · 임이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 및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위해 소득기준의 경우 7천만원 이하를 9천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며,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30%, 9억원 이하의 경우는 경우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36조

의3제1항 및 제40조의4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3억원"을 "4억원"으로, "4억원으로"를 "6억원으로"로, "감면(이 경우「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를 "감면한다"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위기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제3조(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위기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위기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 하는 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법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의 해당 주택에 재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 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 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 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 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9천만원-----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 세법 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 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 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 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 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u>감면</u>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 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 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4억원
<u>6</u>
억원으로
<u>감면</u>
<u>한다</u>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감염병 등에 따른 경
제위기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
면) 「지방세법」 제104조제3

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

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

0분의 30(공시가격 9억원 이하

인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한

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